

情報管理와 關聯된 法的問題

李 淳 子*

〈目 次〉

- | | |
|-------------------------|------------------|
| I. 緒 論 | 4. 情報接近權과 私生活保護法 |
| II. 社會變化에 따르는 問題點과 露出 | 5. 도서관의 奉仕와 著作權法 |
| III. 情報관리의 법적 問題와 關係법률 | 6. 職種의 特殊性과 勞使問題 |
| 1. 憲法에 나타난 基本法 | 7. 財産과 사람의 保護問題 |
| 2. 도서관법 | 8. 기 타 |
| 3. 알權利와 情報檢閱에 관한 법 | IV. 맺는 말 |

I. 序 論

우리는 흔히 아주 선하고 점잖은 사람을 보고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법없이 살 수 있는 개인도 집단으로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도 특히 학문과 지식을 다루는 도서관이나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사회의 일반적 수준에서보다는 상식과 윤리가 좀 더 큰 영향력을 行使하고 많은 문제가 法以前에서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다. 상당히 최근까지도 도서관이나 기타 정보관리 기관이 법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되었고 운영책임자나 실무자가 그들의 업무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분야에서도 법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며 따라서 도서관 업무나 정보관리에 관련이 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 관계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데 20여년 전에는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법률관계의 논문들이 근래에 와서 도서관이나 정보 관리 분야의 專門學術誌에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 주목할만하다.¹⁾ 구체적인 예로도 도서관관계 학술지들이 全卷特輯으로 이 문제를 다루거나 連載誌上講座를 개설하기도 하여 많은 전문인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²⁾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도서관 및 정보학 대학원에서 정보관리에 관계되는 법률문제를 다루는 과목을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곳도 생기고 있다.³⁾

도서관이 당면하는 법적인 문제중 많은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다. 專門職內部の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倫理綱領이 설정되어 그것에 의한 指針을 따라서 별문제 없이 방지되거나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여건에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중에는 전문직 내부에서는 調整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이다.

미국의 도서관관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서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提起되었고 도서관장이 도서관운영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올바른 전문변호사의 選定과 그후의 업무협조방법 등의 실제적인 문제가 도서관의 최고경영자들간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 1984년에 미쉬건 주립도서관에서는 정식으로 도서관법률 전문가의 직책을 만들고 도서관운영에 관계되는 법률문제를

- 1) 1972-73년도판 Library Literature 에 처음으로 Librarianship-Legal aspects 라는 주제표목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헌을 세분하기 시작했으며 1974~75년도 판에서부터는 구체적인 도서관업무와 정보관리의 주제표목에서 Legal aspects 의 하위표목이 많이 쓰이고 있다.
- 2) *Legal issu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r.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7, no. 4(Winter, 1986)
"Legal issues affecting libraries and librarians." *American Libraries*, vol. 19, no. 1-4(Jan. ~April, 1988)
- 3)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Bullet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ervices(LSC 829-61) 1983년에 개설.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ulletin*. Legal issues in information handling.(LIB SC 284) 1976년에 개설.
- 4) W.L. Peat. "On being a client: what every library director should know about lawyers." *Library Journal*.(Nov. 1, 1981) p. 2068-90.

專擔시켰다. 그의 직책은 새로운 도서관관계 입법에 관해 도서관 직원과理事陣에게 알려주며 도서관업무에서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사서들을 교육시키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주로 다루게 되는 문제들이 圖書館法, 著作權法, 勞動法, 私生活保護法, 會議公開法, 情報自由法 등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⁵⁾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도서관의 업무와 어떻게 실제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주로 미국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여기서 언급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차츰 부상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서관학 및 정보학의 교과과정에서 적어도 대학원 수준에서는 이 문제가 취급되어야 한다는 持論에서 그러한 과목의 敎案으로 제시하려는 것도 이 글의 목적이다.

II. 사회변화에 따른 問題點의 露出

도서관이나 정보관리기관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변화들이 이들 기관의 업무를 옛날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급기야는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다음에 들어본 몇가지 변화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이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相互依存的이며 전체적인 변화의 上昇要因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인하는 문제들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기록을 모으기 시작한 이래, 또는 도서관이 생긴 이래 처음부터 계속 언급되고 나름대로 해결해온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사회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좀 더

5) Charles B. Wolf and Ruth H. Dukelow. "Laying down the law for librarians." *American Libraries*. vol. 21, no. 2(Feb. 1990) p. 149-50.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鼓吹하고 해결의 합의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 우선 도서관 업무나 정보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사회의 進路方向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민주화, 개방화의 추세에서 일반국민의 교육수준이나 지식수준이 계속 향상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계급사회에서 학문이나 지식과 연관이 있는 일부 엘리트 계층의 전용물이던 도서관이 점점 더 다양한 계층의 일반대중을 고객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고객수의 급증에 따른 질의 下向 平準化에서 전에 없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진 것이다.

둘째, 意識化된 일반대중은 헌법이나 기타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즉 인간의 정신적 자유나 알권리에 대하여 투쟁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와 연결되는 知的自由, 정보의 접근권, 개인권의 보호 등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크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이용제공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서 도서관측의 裁量이나 결정권이 크게 도전을 당하고 있다. 도서관의 이용자인 일반시민이나 사회집단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지적자유보장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는 한편 개인의 私的情報의 보호를 주장하는 개인권 보장의 요구는 도서관이 가진 특정정보에 대한 기밀을 요구하므로 상충되는 이해를 도서관이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

셋째, 삼차산업사회에서 정보의 가치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제 情報資源은 모든 물질자원을 統整하고 평가하여 그 가치와 유용성을 부여하는 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의 가치가 갖는 직접적인 換金性내지 물질적인 이해가 도서관의 정보봉사와 연관되는 일이 생긴다. 특히 산업적인 정보 서비스기관의 영업행위가 보편화되면서 도서관의 정보제공봉사에서라도 이용자들은 똑같은 수준의 책임추궁을 하게 된 것이다.

정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또 知的所有權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저작권법과 그와 관련된 법률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

하여 개정되었으며 국제적인 협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사용자의 공정한 정보사용권도 보호하고 있다. 지적소유물의 창출자인 저작자 개인의 권익보호도 정보관리자들의 의무이며 또한 지적산물의 원활한 이용이 가져오는 社會公益性的의 추구도 똑같이 중요한 과제이다.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이 상충되는 두가지 利害의 衡平을 위해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작물의 公正使用을 위한 배려를 成文化해 놓았다. 그러나 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도서관의 정보제공봉사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加速化하는 기술의 발달은 계속 새로운 표현, 저장, 전달매체와 關聯器機를 출현시켰다.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취급하게된 매체의 다양화와 저작물 複製의 용이성은 도서관이 자료를 취급하는데에 있어서 전보다 많은 책임을 지게한다. 저작권법에서도 예외없이 도서관 등의 기관이 봉사 업무와 관련된 저작물의 복사허용이 條文化되어 있으나 실제운영에서의 적용 한계도 異뿔이 많고 또한 도서관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복사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뿐 아니라 도서관의 기계화로 인하여 비싼 기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재산상의 보안문제나 보험계약에 따르는 문제, 기기 구입이나 임대 계약문제도 전과는 비교도 안되는 무거운 부담을 도서관에 안겨 준다.

다섯째,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는 도시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죄율이 높아졌다. 도서관시설이나 건물이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불만의 근거없는 표적이 되었다. 1960년대, 70년대의 미국에서는 학원소요나 베트남전 반대 반정부시위에서도 도서관의 건물 파괴, 자료의 훼손이 빈번하였고, 도난, 방화 등의 범법행위가 도서관에서 많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원소요시 도서관 건물이 빈번하게 농성장소로 점령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다.

여섯째, 최근에 와서 더욱 활발해진 勞使問題에서 고용, 급여, 승진 등의

인사의 공정성이 강조된다. 처음부터 司書職은 여성직종이라고 규정될 정도로 여성의 占有率이 높으면서도 아직도 이 사회에 남아있는 남녀차별 대우가 여러면에서 여성사서들의 균등한 기회부여를 방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로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곱째, 여러나라에서 정보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여 정보유통장려를 위한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법률에서도 정보관리나 유통과 연관성을 갖는 부분이 많아졌다. 문화진흥정책, 과학기술정책,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국가정책계획에 포함되고 그 支援을 위한 법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도서관의 기능이나 업무에 연관된 문제의 예를 들어 본 것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사회공통적인 문제들이 도서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구조의 일반적인 복잡화로 비영리공익단체들도 개인이나 다른 단체와 利害相衝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졌고 또 일반적인 분업화나 전문화현상 때문에 전에는 자체내에서 해결이 가능했던 여러가지 일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 버려서 도서관도 많은 일에서 그들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된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Ⅲ. 情報管理의 法的問題와 關係法律

1. 憲法에 나타난 基本權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업무가 인간의 지적활동과 사회활동의 모든 측면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가지므로 이와 관계되는 여러 법은 어느 나라의 헌법에서도 나타나는 기본적인 인권이 기초가 되고 있다. 정보의 사용자인 고객의 知的追求의 권리나 이들을 봉사하는 직원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1987. 10. 29 개정)에서의 예를 보면 국민이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을 추구할 권리(제31조), 학문과 예술을

누릴 권리(제 22 조)뿐 아니라 저작자나 발명가 또는 예술가의 노고를 인정하는 지적소유권(제 22 조 2)도 보호한다. 또 知的人間으로 주관을 갖고 살 수 있는 양심의 자유(제 19 조), 종교의 자유(제 20 조), 사생활의 자유(제 17 조)를 보장하고 각자의 주관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 21 조)를 보장받으며 그에 따른 수단으로 통신의 자유(제 18 조)도 누릴 수 있다.

사서적이나 정보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專門職에 대하여 가진 권리는 그들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별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권(제 11 조)을 누리며 생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으로 살기 위한 근로의 권리(제 32 조)와 근로조건에 향상이나 직종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단결하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 32 조). 많은 新生國 헌법의 기초근거가 된 유엔의 人權에 관한 世界宣言(1948. 12. 10 제정)에서도 개인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 18 조), 남의 간섭을 받지 않을 사생활의 자유(제 12 조),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자유 및 모든 정보와 사상을 探究, 入手, 傳達할 자유(제 19 조)와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남과 공유할 수 있는 집회나 結社의 자유(제 20 조)를 인정한다. 또한 여기서도 교육의 권리(제 26 조), 학문과 예술을 통한 문화향유권과 인간이 지적활동에 의해 제작한 文學上, 藝術上, 科學上 작품에 대한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권리(제 27 조)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사회인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직업의 선택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제 23 조)도 명시되어 있다.

인간이 한개인으로 또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에 필요한 신변 및 인격의 보호를 보장받고 생산적인 지적활동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모든 법률이 제정되고 적용된다. 도서관업무나 정보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2. 圖書館法

많은 나라들이 도서관에 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회교육시설이나 학교설치에 관한 기준령에서도 도서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1987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국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제1조)하고 있으며 여러 館種圖書館의 일반적 定義와 시설 및 자료, 사서직원에 대한 基準을 제시한다. 관중별 도서관의 설립근거와 업무, 특수성에 대해 규정하고(제2~6장) 도서관 정보협력에 관한 조항(제7장)과 범위반에 대한 벌칙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제8장).

도서관법과 관련이 되는 법으로는 사회교육법이나 학교법으로 도서관을 사회교육시설로 이용하도록 규정하였고(사회교육법 4장 23조) 초등·중등교육과 관련하여 學校施設 基準令(제5조5, 6. 부칙별표 2, 3)과 大學設置 基準令(제12조)에서 각각 도서실과 도서관의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입법된 國會圖書館法이 있으나 국립도서관과의 협력관계가 도서관법(제16조 9)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도서관법은 1956년에 도서관봉사법(Library Service Act)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어 1964년에는 도서관 봉사와 설치를 위한 법(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Act)으로 확대 개정되어 공공 도서관 설치와 봉사를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국립도서관인 국회도서관,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농학도서관 등을 위한 별도의 법과 도서관 및 정보과학 연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NCLIS) 설치법 등이 있다. 1965년에는 초중고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서 도서관 설치를 위한 부분이 추가되어 도서관 기능이 제도적인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됨을 확실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교육을

지원하는 成人教育法(Adult Education Act) 등도 도서관 사업을 확충하는 관련법으로 들 수 있다.⁶⁾

3. 알 權利와 情報檢閱에 관한 法

검열이란 한 사회의 힘을 가진 계층이 일반대중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자유롭고 개방된 정보접근 내지 의사소통을 통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보내용의 선택을 대신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힘을 가진 계층이란 정치적인 세력이나 지식의 힘, 또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엘리트계층을 말하지만 이런 뚜렷한 이름을 가진 계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그 사회성원의 숫적 다수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습관이나 통념이 더 큰 통제의 힘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통제의 이유는 한마디로 일반대중에 대한 불신이다. 어떤 종류의 정보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전달되어 그 결과로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위를 誘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미리 막아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어느계 층 즉 미성년자가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정보를 다 이해하고 소화할 능력이 없으며 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검열을 주장하는 측의 持論이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대중매체 전달방법인 대중연설이나 무대예술의 公演에서 시작하여 印刷媒體의 보급, 映像媒體의 출현의 각 단계에서 여러가지 방법의 의사표현이나 정보보급이 制止당하고 통제되어 왔다. 특히 활자발명으로 인한 인쇄물의 보급이 사상이나 정보의 유통을 갑자기 활성화 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당시 유럽의 의식화된 민중이 교권이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16~17 세기의 이태리

6) *Library and Book Trade Almanac (Bowker Annual)* (New York: Bowker)에는 매해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affecting libraries,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affecting the information industry* 라는 고정란이 있다.

나 영국에서 국가가 특정 출판업자에게 준 출판허가의 특권을 저작권의 시초로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그것은 저작권과는 無關한 정부가 출판을 통제하고 내용을 검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사상가들은 개방원칙에 입각하여 누구나 자기선택에 의한 완전한 경험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정보의 歪曲報道, 誤判 등이 폐쇄 정책에서 기인하므로 모든 사람이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에 의해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검열이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체제수호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자유로운 표현이나 정보전달의 통제는 언론, 출판, 모든 예술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방법에 있어서도 정보원을 원천봉쇄할 수도 있고 또 일단 일정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할 수도 있다. 또 나라에 따라 統制主體와 對象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폐쇄된 專制主義 국가에서는 정부의 검열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단일종교 국가에서는 교회와 정부의 검열이 종교사회적인 부분에서, 개방된 민주국가에서는 사회단체나 일반여론의 압력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도 나라마다 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북한 내지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정부의 검열이 계속되어 왔다. 검열의 정당화는 國家保安法에 있으며 특히 7조 5항에서는 '利敵行爲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배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反國家 活動을 규제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主檢閱 기관인 國家安全企劃部 및 情報調整協議會(국가안기부법 제13조)의 기능인 정보 및 보안업무 운영상의 조정(정보조정협의회규칙 제2조)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조정규정으로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중 정보 및 보안업무와 관련된 것을 정해 놓았다. 즉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체신부) 신문, 통신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 영화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동향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에 관한 사항(문화부)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처) 등이다.

이러한 검열기준은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며, 공연법에서 각본등의 심사(공연법 제 14 조 2)나 공연의 정지(제 17 조 5)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公安 또는 美風良俗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때 공연윤리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제 25 조 3) 영화법에서도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영화법 제 12 조) 상영전에 심의기준(제 13 조)은 '國家의 權威, 公序良俗, 사회질서, 국제간의 우의'를 해치거나 국민정신을 解弛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열이 시행되고 있다.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제한이 있다.(음반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외국간행물의 배포에 있어서도 문화공보부장관이 國憲紊亂이나 공안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때 배포를 중지시키거나 내용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개방된 미국사회에서는 19세기부터 음란출판물의 유통을 법으로 단속하는 Comstock Act(1873)라는 법이 제정되어 음란출판물이 우편으로 배달되지 못하도록 우편검열을 할 수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와 소위 MacHarthy era 로 일컬어지는 1950년대에는 反共思想의 강화로 공산주의 서적에 대해 도서관에서 있었던 검열 등은 極右團體의 압력이나 사회의 일반여론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와서 점점 高潮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주장의 강화로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언제라도 내용의 복사물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情報自由權(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1966년에 입법되었다. 이것은 애초에는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들에게 올바른 보도를 위해 정부가 가진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법의 시행이후 모든 분야에서 지적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국가보안이나 사회질서 또는 개인사생활권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9개 조항을 명시해 놓았다.⁷⁾

도서관에서의 자료검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도서관이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마찰없이 존재하기 위하여 도서관자체에서 미리 알아서 이용자가 異意를 제기하지 않도록 자료의 선정에서부터 自體檢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나 수준은 개인의 생각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도서관이 穩健하고 保守的인 수준에서 자료선택을 한다고 해도 문제삼을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특히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대학도서관 등에서 1950년 이후 도서관 측에서 좀 더 폭넓은 自律權을 갖고 여러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원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의식이 강화되었다. 지적자유를 지키고 도서관에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검열을 거부하기 위한 전문단체의 힘을 모으기 위하여 ALA에서는 Office of Intellectual Freedom을 설치하고 도서관의 자율권을 도우고 있다.

또한 圖書館 權利憲章(Library Bill of Right)⁸⁾이 1949년에 선포된 이후 1980년까지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그 내용에서도 검열에 대한 거부, 표현의 자유와 정보나 사상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자료수집에 있어 모든 계층의 견해를 반영하고 특정자료가 저자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특정견해 때문에, 또는 특정계층의 편견이나 학설상이건 때문에 수집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7) Wayne Overbeck and Rich D. Pullen.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2d ed.(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85. p. 230).

8) Library Bill of Right adopted 1948, amended 1967 and 1980, by ALA Council, in *Library Collections*, by Richard Gardener. New York, McGraw-Hill, 1981. p.329.

圖書館權利憲章과 보완적인 宣言이 계속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1953년에 채택된 Freedom to Read Statement와 1979년에 채택된 Freedom to View Statement⁹⁾ 등에서 도서관자료의 모든 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한 지적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도서관이 일상업무에서 부딪치게 되는 마찰을 처리하기 위한 실제의 방법으로는 장서개발정책에서 자료수집의 철학, 범위 등을 명시하고 검열거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시키며 그것과 관련된 세칙으로 장서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항의를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사무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는 圖書選定과정에서의 검열이나 그에 관련된 압력이 별로 없는 것은 앞에서 말한대로 여러 법에서 이미 출판물이나 시청각자료의 배포과정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研究支援을 하는 특수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정치적으로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념서적이나 공산권관계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안기부법에 따른 정보자료 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819)에 의해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때만 자료는 열람할 수 있으며(제8조) 자료의 취급도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자료 취급지침(개정 1988. 9. 1)에 의해 특정취급자를 인가하여 일반의 열람이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다. 1989년 6월이후 개방정책에 따라 도서관 특수자료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접근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이나 규정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다.

4. 情報接近權과 私生活保護法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집단에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는 반면, 또 때로는 집단에서 놓여 나와 사회 환경이나 다른 인간의

9) Freedom to Read, 1970. A Joint statement of ALA and AAP. Freedom to View. Adopted by ALA Council and the Educational Film Library Association. In *Defusing Censorship: the Librarian's Guide to Handling Censorship Conflicts*, by Frances Jones. (Phoenix: Oryx Press, 1983) Appendix: p. 157-8, p. 186-91.

참견에서 해방되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절대로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이 되기 위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아주 개인적인 充電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생활권이란 물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감정적이고 사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임시로 또 自意로 사회에서 이탈하여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권의 침해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직접적인 것으로는 힘에 의한 개인공간침해 뿐 아니라 공공장소의 방송이나 광고 등의 원치않은 메시지의 전달, 상품광고 우편물, 광고전화, 집단주거 단지내의 안내방송, 개인적인 행동을 훑쳐보는 행위같은 물리적인 침해가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개인사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 즉 성형수술이나 인공유산을 당사자가 결정할 권리나 단체가입 혹은 종교의 선택, 배우자나 친구의 선택 등에서 남의 참견을 받는 정신적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과는 달리 간접적인 침해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개되고 이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는 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며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통이 빈번하고 용이해지면서 도중의 정보누설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때문에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대량으로 계속 수집이 되어 축적이 되고 있다. Freid는 정보사회에서 말하는 개인권을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¹⁰⁾라고 정의했고 Westin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¹¹⁾라고 정의했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남의 손에 있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말할 수 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또 사람이란 자신의 어떤 일에

10) Charles Freid, "Privacy." *Yale Law Journal*, 77(1968) p. 477.

11) Alan R. Westin,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Atheneum, 1967) p. 7.

대해서는 자기만이 알고 있고 싶은 것,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고 싶은 것 등으로 여러 差等을 둘 수 있으며 이런 것이야말로 사회안에서 타인과의 親密度의 표시이며 지극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의 정보처리와 데이터 베이스구축이 우리사회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개인기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점점 더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단 蓄積된 데이터가 나중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로 쓰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통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더구나 이러한 거대한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같은 個人識別固有番號 등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쉽게 수집되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책이 없다. 또 대부분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대개는 제시된 목적과 별 관계가 없는 사항도 같이 수집하여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게 보통이다.

이렇게 일반시민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권이 알게 또는 모르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침해가 일어나게 되자 1972년 미국의 보건, 교육, 사회보장성(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처음으로 전산화된 개인정보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연구를 發注하였다.¹²⁾

이 연구의 결과로 나온 건의사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정보운영을 위한 규칙(Code of Fair Information Practice)을 만들어야 할 것과 그 규칙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하였다.

- 1) 개인에 대한 어떤 기록도 비밀리에 만들어질 수 없다.
- 2) 개인이 자기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것이 기록되었고 그것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12) U.S. Dept. of Health, Education, Welfare. *Records, Computers and Rights of Citizens.* (Washington: 1972)

3) 특정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의 정보가 당사자의 허락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4) 개인이 자신에 관한 기록을 언제나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사용하거나 보급하는 일을 하는 기관은 그 정보를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오용방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¹³⁾

1974년에 입법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이런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그 법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록에 대해 그 대상, 용도를 공시할 것과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완전성에 대해 정보수집기관에 수정요청을 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정보수집기관은 자신들이 내세운 목적과 관계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의 사전승락없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줄 수 없도록 하였다.¹⁴⁾

프라이버시법은 주로 센서스나 국가경제 사회통계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 정부기관의 정보관리가 주 대상이 되는 것이며 힘을 가진 국가기관이 그렇지 못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 국민의 사적정보취급에 있어 공정성을 최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강제선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17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서 시작하여 우편법(제3조), 공중전기통신사업법(100조, 101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2조) 등에서 업무관련자가 직무상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漏泄하거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음이 명시되

13) Ibid. p. xx-xxi.

14) Kent, Greenwalt, *Legal protections of Privacy*. (Washington: Office of Telecommunication Policy, 1975) p. 57-60.

어 있다.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 기관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도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프라이버시법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惹起되었다. 공공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대출기록을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이 1970년대 이후 빈번하게 되자 1975년에 ALA의 지적자유위원회에서 도서관기록의 秘密保障政策文(Policy on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을 제정하고 사서들이 업무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⁵⁾ 여기서는 도서관의 모든 개인기록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것과 이런 기록이 법이 요구하는 경우이외에는 도서관 업무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골자로 하였다.

개인기록의 機密이 더욱 요구되는 곳은 환자의 의료기록이나 고객의 법적 기록 등을 보관하는 특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이다. 그러나 일반도서관에서도 대출기록은 한개인의 관심분야 독서나 연구의 기록이며 정보봉사, 자료제공 봉사 또는 On line 탐색 등의 기록으로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나 사생활의 관심사가 들어나기 쉽다.

연구소의 특수자료실이나 기업체의 정보실에서는 특히 어떤 정보는 研究先取權을 지키기 위해서나 경쟁업체의 산업정보 탐색전에서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1981년에 개정된 사서직의 倫理綱領¹⁶⁾에서도 제3항목에 도서관이용자의 사적정보에 대한 기밀보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ALA의 參考 및 成人奉仕部(Reference and Adult Service Division)가 만든 정보봉사지침에서도 윤리적 부분에서 고객에 대한 개인의 기밀보장을 성문화 해 놓았다.¹⁷⁾

도서관에서 수집 보관 할 수 있는 개인의 기록이란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기에 필요한 정보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열람 대출

15) "Policy on Confidentiality of Library Records." *American Libraries*. vol. 1, no. 11(Dec. 1970)

16) Statement on Professional Ethics, 1981. *American Libraries*, vol. 13(Oct. 82) p. 595.

17) "A Commitment to Information Services: Developmental Guidelines." *R.Q.*, vol. 18, no. 3.(Spring, 1979) p. 275-78.

등의 자료이용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확인하고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參考質疑나 On-line 검색의 참고봉사기록도 질의 자체에 관한 것과 해당의 可否만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용자의 성별, 나이, 직업이나 정보의 용도 등의 기록은 업무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용자 뿐아니라 도서관 직원에 관해서도 인사관리 기록은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사항에 제한한다. 자세하고 개인적인 인사기록은 직원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기관장의 좋은 의도를 돕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생활 침해의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경영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 외에도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도서관의 내규나 목계 등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른 옷차림이나 행동양식, 주관에 따라 가입하는 사회단체나 정치활동 등이 도서관 경영자의 사건이나 태도 또는 도서관 정책때문에 구속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보호문제와 관련을 갖고 생각해야 할 일이다.¹⁸⁾

5. 도서관의 奉仕와 著作權法

1) 저작권법과 도서관의 複寫物 제공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예술적 창의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 어떤 매체에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들어 낸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排他的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에 대한 두가지의 다른 견해가 영미저작권법과 대륙법의 저작권법을 각각 조금씩 다르게 발전시켰다. 영어의 Copyright 라는 말의 의미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opy)라는 뜻과 저작물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own and control the copy)라는 뜻으로 두가지 다 저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자가 그것을 물리적인 방법으

18) Stephen Harter and Charles Busha. "Libraries and privacy legislation," *Library Journal* (Feb. 1, 1976) p. 475-481.

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산적인 권리의 의미이다.¹⁹⁾ 대륙법에서의 Droit d'auteur 나 Urheberrecht 는 글자 그대로 저작자의 권리라는 말로 그 내용은 저작자가 주체가 되어 저작물을 물리적 재산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著作財産權과 저작물을 저작자의 인격이나 사상의 분신개념으로 看做하여 消滅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영속적인 권리인 著作人格權으로 본다. 그러므로 영미법에서는 저작재산권만이 저작권법에 있고 대륙법이나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등 많은 동양의 나라들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複製權, 公演權, 放送權, 展示權, 配布權, 이차저작물 등의 작성권이며(저작권법 제5절 제16조~21조 저작재산권) 대개 다른 나라들도 조문에서 표현된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재산권의 내용은 다 같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제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와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3절 제11조~13조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어느 나라에서나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은 첫째, 정신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응당한 報酬를 보장함으로써 저작자들은 動機化하여 국가의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 셋째, 지적소유물의 정상적인 시장유통이나 수요공급을 원활화하는 것, 넷째, 개인의 기본권인 사상의 표현권을 보장하는 것, 다섯째, 인류사회의 정신적 유산의 축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²⁰⁾ 또한 국제저작권 협약 등으로 우리는 국제지성사회를 형성하고 또 어느나라 사람이거나 어느 장소에서거나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원하는 저작물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蒐集管理하고 이용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저작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관리자들은 저작자의 창의력을 존중하

19) *New Encyclopedia Britanica*. Macropedia, 1985. s.v. Property law.

20) Claude Masouy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BU Review*, vol. 2 5, no. 2(1974) p. 49-50.

고 노고를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저작물이 생산되어 도서관의 자료가 확충되는 것을 희망하는 한편 저작물이용자들에게는 최대 봉사로서 원하는 정보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임무로 생각한다.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장과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보장이 가져오는 사회공익성의 추구라는 상반된 이해의 균형이 저작권법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며 또한 저작권법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저작권법에서나 저작재산권에는 제한이 있어 일정한 기간의 유효성과 또 특정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면제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저작자가 應分の 報償을 받고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저작물을 사회에 환원하여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물이 되도록 한다. 또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에도 그 사용이 사회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조건에서는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된다. 현재 어느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도서관과 직접관계가 되는 저작권법의 부분은 도서관이 업무상 만들게 되는 복사물이 복제권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제한에서 도서관 등의 정보관리와 연관된 공익 봉사기관에 대해 마련된 특별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허용조건을 명시하였다(저작권법 제28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저작물의 한 부분을 一人一部 제공할 수 있으며(28조 1) 도서관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해 복제가 허용된다. 즉 장서를 마이크로 형태로 복사하거나, 稀貴本の 閱覽用本 제작 또는 毀損된 자료의 보관이나 분실된 자료를 시장에서 구득 불가능한 경우에 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끼리 상호 협력상 절판된 자료를 요구에 따라 소장도서관에서 복제물을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며(28조 3)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의 도서관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저작물의 부분은 복제할 수 있으므로 지정도서 자료를 복사해 놓을

수도 있다.(제 23 조)

이러한 도서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이외에도 도서관에서 이용자나 직원개인이 할 수 있는 복사는 時事報道에 이용하기 위한 것(제 24 조), 공표된 저작물의 引用을 위한 것(제 25 조),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을 위한 것(제 26 조), 私的使用을 위한 것(제 27 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저작물의 사용은 누가 봐도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익성이 있는 사용이며 양적으로 허용한도 이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각각 Fair dealing, Fair use 라는 용어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명시해 놓았다. 미국의 저작권법 제 107 조(排他的인 권리에 대한 制限: 공정사용)에서 학문이나 조사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공정사용의 요건을 네가지로 요약하였다. 즉 사용의 목적과 성격, 사용되는 저작물의 종류, 사용된 부분이 전체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도,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물의 價値나 潛在的의 市場性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서 그 사용이 공정한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도서관이 이용자 봉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복사의 조건과 정도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상세하게 명시했는데(제 108 조) 이용자에게 개인연구나 조사목적이외에는 제공된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시키고(108(d) - (1)) 복사물을 신청하는 장소와 신청용지에 著作權侵害可能性을 周知시키는 규칙을 공고하며(198(d) - (2)) 타도서관에 의뢰해야 하는 복사물 요청에서는 그 복사물이 이용자 개인만의 소유물이 되며 앞에서 언급된 목적과 조건에서만 이용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108(e) - (1)) 또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사가 연관성이 있어서는 안되고 미리 계획된 제도적인 복사는 금지되며 도서관 상호협력의 복사물제공이 도서관의 購買나 定期刊行物 購讀을 대신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08(g))

특히 이 조항을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CONTU)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매나 구독을 대치할 정도'의 상호대차는 복사물 제공요구가 시기적으로 5년 이내에 출판된 단행본이나 정간물 중에서 1년에 5번이상 하게 되는 경우라고 정하였고(Rule of five) 상호대차를 위한 조건과 형식절차를 위한 지침을 108조(g)항에 연관하여 제시하였다.²¹⁾ 교육기관의 도서관에서 교수의 요청에 의해 교재를 준비하거나 지정도서를 여러부 비치하기 위한 복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이 있다.²²⁾ 이 지침에서도 아무리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여 공익성을 가진 사용이라도 복사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는 안되며(Brevity), 교수의 임시적 결정에서 선택된 교재여야 하며(Spontaneity), 반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같은 교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Non cumulative effect)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복사의 양은 날로 증가하고 종류도 더욱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측에서 이용자들에게 最大의 정보봉사를 하면서 저작권법에 나타난 복사문제에 관한 모든 조항을 遵守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Stedman은 도서관이 어려운 처지에서 主觀있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²³⁾ 첫째, 될 수 있는 한 규칙을 따르고 사무적이며 기계적인 일은 완벽하게 해놓을 것, 둘째, 필요이상의 복사는 절대로 하지 말고 이용자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킬 것, 셋째, 봉사란 명목으로 위법이 되는 일은 하지 말 것, 넷째, 지정도서복사가 많은 양이 介在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것, 다섯째, 도서관복사의 기록은 잘 관리하고 出處가 不分明한 복사물을 이용시키거나 所持하지

21)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Final Report*.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79) p. 54-55.

22) Agreement on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In *Exemptions and Fair Use in Copyright*, by Leon Seltzer.(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Appendix B. p. 158, 162.

23) Jons C. Stedman. "Academic library reserves, photocopying and copyright law." *AAUP Bulletin*, vol. 64(Sept. 1978) p. 146-47.

말 것 등이다.

2) 컴퓨터와 연관된 저작물의 사용 및 저작권 보호

컴퓨터와 연관된 저작물을 크게 나누어서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저작물로 취급하느냐에 대한 是非가 처음부터 계속 된 것은 이들이 다른 어느 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속성과 형태, 이용 방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嚴然한 인간의 知的產物이며 특정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매체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或者는 이들이 산업기술 분야의 제품으로 보아 특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제기구에서의 의견이 특허권보다 저작권쪽으로 많이 기울자 많은 나라에서 이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世界知的的所有權機構(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에서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Convention)에서도 1973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特許權適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²⁴⁾ 그러나 이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데이터베이스는 속성으로 보아 편집저작물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나 미국저작권법에서나 특별한 언급조차 없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만 양국저작권법에서 특별조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언급되었고(저작권법 제2조 12) 저작물의 例示에도 포함되었는데(제4조 1항 9호)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과 같이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4조 2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이 정한다'고 하고 改正된 저작권법과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법률 제3920호 1986. 12. 31)을 입법시켰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複製, 改作, 翻譯, 配布 및 發行의 권리(제8조)로 규정하였고 이용자들의 공정사용권을 위한 특별배려인 프로그램

24) W.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London: Sweet and Maxwell, 1981) p.172.

저작권의 제한에서는 저작권에서와 같이 도서관 등에서 가질 수 있는 복제의 특권 등이 없고 교육기관에서 수업과정에 제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12조 3)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만(12조 4) 복제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1976년 개정때만 해도 컴퓨터와 연관된 저작물에 대한 特別配慮를 하지 않았다가 후에 CONTU의 建議에 따라 1980년에 저작권법 제 101조의 定義 부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追加시키고 제 117조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떤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하거나 손질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것은 그 목적이외는 쓰여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내부사용에 제한하는 조건임을 밝혔고, 다른 모든 사용은 다른 저작물과 똑같이 저작권법의 공정사용이나 다른 권리의 제한부분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같이 적용되고 있다.

1984년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칩제품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저작권법의 제 9장으로 추가하였는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半導體 칩 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로 命名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법은 반도체의 집적회로(Mask work)의 形態에 대한 보호이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보호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베이스 등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외에는 특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복사기보다 더 확대되고 개인용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 복제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현실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개인의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12조 4)를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자료의 일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所藏하고 대출이용시키는 경우에 이용자가 대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보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복사를 하지 않도록 사용지침을 성문화 하여 주지시킬 책임은 도서관에게 있다.

도서관에서 On line 書誌 정보검색을 하거나 혹은 全文入力 데이터 베이스에서 원문의 같은 부분을 여러번 사용하게 되는 경우 데이터 베이스 사용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자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덜어놓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down loading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인쇄매체란 일단 구입하고 나면 그것을 몇번이고 읽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down loading 도 처음에 한번 댓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First Sale Doctrine 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베이스를 저작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다른 점은 다른 저작물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킨 동안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그동안 덜어낼 수 있는 정보는 사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down loading 도 정도가 지나치면 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down loading 은 인쇄물의 복사보다 더 追跡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 사용계약에서의 약속을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어떤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들은 계약에서 사용료의 差等制를 적용하여 down loading 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Nasri 는 데이터베이스의 down loading 도 어떤 조건에서는 공정사용으로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⁵⁾ 그는 다른 어느 저작물에서처럼 down loading 의 목적에 따라 그것이 非商業的이며 교육이나 연구에 필요한 경우 허용되어야 하며 또 이용자 측에서도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이 끝난 후에는 곧 지워버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 공정사용여부를 가리는 요인이 되며, down loading 의 양도 문제가 된다. 여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down loading 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현 시장이나 잠재 시장에 미치는 손해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 職種の 特殊性과 勞使問題

우리사회의 모든 직종에서 노사문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는 뚜렷한

25) William Z. Nasri, "Copyright: a lasting questions for manager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7, no. 4(Winter, 1986) p. 96.

사실이다. 사서들이나 정보서비스 종사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기관의 경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사서직이나 정보관리 전문직이 다른 직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그 다른 屬性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糾明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專門職의 認定

사서직이나 정보관리직 성격이나 기능이 그 자체의 독립적인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다른 전문직에 연관되어 그것을 돕고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의료직에서 의사가 주가 되는 전문직이고 간호원, 약사 검사실 기술자, 병원 행정직 등의 일이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나 교수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주가되고 사서는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支援人力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전문직을 지원하는 직종은 흔히 準專門職(Para-professional, sub-professional) 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직업의 細分化和 전문화에 따라 많은 새로운 전문직이 생기고 기존의 업종에 대한 인식이 바뀔에 따라 과거의 지원적이고 보조적이라고 생각하던 직종에 대해서 格의 차별을 두기 보다는 분야가 다른 전문직간의 同伴者關係(Partnership)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사서직이나 정보관리직도 완전히 독립적인 전문직으로 부상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교수대우, 연구도서관 사서들의 연구직대우, 사서교사들에게도 일반교사와 같은 대우를 주장하는 조직내에서의 변화나 그 자격에 대한 많은 논의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²⁶⁾

2) 여성의 偏重現象

26) Dale E. Shaffer. *Maturity of Librarianship as Profession*,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68)

Harold Lancour. "The Librarian's search for status." *Library Quarterly*, vol. 31, no. 4(Oct. 1960) p. 369-79.

Mary Lee Bundy and Paul Wasserman. "Professionalism reconsidered."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29, no. 1(Jan. 1968) p. 5-21.

John Weatherford. "Participating something or other through bargaining." *Library Journal* (May 1, 1975) p. 823-25.

사서직의 生成過程이나 과거의 인식때문에 이 직종에 종사하는 人的構成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의 성격이나 종사자의 취향, 또는 사회인식 때문에 특정 업종에서 兩性중 하나가 優勢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직종에서 그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인 경우 그것을 여성직종으로, 80% 이상이 남성이면 남성직종, 남성이 30~80%이면 混成職種으로 간주한다.²⁷⁾

미국에서 사서직이 독립적인 직종으로 정착된 것은 전문교육기관의 개설, 전문직 단체의 결성 등이 실현된 1870년대로 본다면 여성취업이 거의 없던 당시에도 사서직이 20%의 여성 占有率을 보인 것으로 시작하여 그 비율은 계속 급증하여 1930년대 91%로 頂點을 이루다가 추세가 수그러짐에 따라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80% 선에서 안정세를 이루고 있어 완벽한 여성직종으로 인정되고 있다.²⁸⁾

이와 비슷한 현상은 교사직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직종으로 간주되는 교사직이나 사서직에서의 內部分業 性別分佈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사직이나 사서직이 교육기관이나 도서관 제도가 확대되어 그 조직이 官僚化됨에 따라 그 안에서 감독, 경영, 조직, 계획 등의 고위기능이나 대외업무는 숫적으로 적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게 되고 직접봉사, 사무처리 등은 여자가 맡게 되었다. 교육감, 교장, 고학년 담당교사에서는 남자의 수가 많고 저학년 담당은 여교사가 전적으로 맡는다면 사서직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아동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직은 여자가 많고,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 대학의 도서관학과 교수직은 남자가 많았다. 특히 여자가 많은 도서관 중에서도 관장이나 감독자는 또 남자의 비율이 높은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²⁹⁾

27) Isabel Sawhill. "Discrimination and poverty among women who head families." In *Women and workpla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 208.

28) Anita R. Schiller. "Women in librarianship." In *The Role of Women in Librarianship: 1876-1976*. (Phoenix: Oryx Press, 1979) p. 238.

29) Myra H. Strober and David Tyach. "Why do women teach and men manage?" *Signs*, vol. 5, no. 3(1980) p. 494-503.

그러므로 여성 사서들의 입장은 원래 사서직이 비영리서비스업종의 준전문직이라는 부당한 사회인식과 사서직 내부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二重의 인차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의 뚜렷한 현상은 임금, 승진, 고용기회 등에서 나타났고, 1970년대 이후 여러 조사에서 원인 규명이나 분석이 이루어졌다.³⁰⁾

미국에서는 1972년대 입법된 雇傭機會均等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이후 사회적으로 풍미하기 시작한 差別撤廢措置(Affirmative Action Program)는 여성과 열세소수집단에 대한 과거의 차별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대한 특별배려로 상황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Moran은 차별철폐조치 이후 10년간(1972~1982)의 변화를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대학도서관 고위경영직에서 여성의 점유율의 변화추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³¹⁾ 고위경영자는 하루 아침에 길러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조사 결과에서는 차별철폐조치가 시행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성진출의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은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관리계층에서 여성의 숫적증가는 뚜렷하므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면 장래에는 고위경영자급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調整改善될 추세가 확실히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에 입법된 男女雇傭平等法에서 우리사회에서 漫延하고 있는 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법에서는 여성을 出産과 育兒로 인해 사회근로 인력으로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30) M.L. Crawford. "The Case for affirmative action in libraries." In *Librarian's Affirmative Action Handbook*. (Metuchen, N.J.: Scarecrow, 1983) p. 16-63.

Kathleen M. Heim.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status of librarians in the 1970's, with special reference to women."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12(1982)(New York: Academic Press)

_____ and Leigh S. Estabrook. *Career Profiles and Sex Discrimination in the Library Profession*. (Chicago: ALA, 1983)

31) Barbara B. Moran. "The Impact of affirmative action on academic Libraries." *Library Trends*, vol. 34, no. 2(Fall, 1985) p. 199-217.

못하겠다는 과거의 통념에 대해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제2조)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헌법 11조)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남녀의 다른 생리적 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특히 모성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즉 육아휴직(11조), 육아시설(12조) 등에서 모성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3) 高學力集團의 노사문제

사서직이나 정보관리직의 종사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보다 비교적 균등한 고학력 집단이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도서관학 정보학 교육이 대부분 대학원에서 시작되므로 정사서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년제 대학의 도서관학과 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로 정사서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性向이 관료주의나 권위주의 보다는 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노조결성에는 다른 직종보다 적극적이지 않았고 단체교섭에서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요구보다 전문직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양상을 보인다.³²⁾

미국에서는 1947년 勞使管理法(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의 입법 이후 전문직의 단체교섭이 시작되었고 1978년의 公務員職改善法(Civil Service Reform Act)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공무원도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이 인정됨에 따라 전문직에서의 노사문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에는 ALA의 團體交渉特別委員會(Ad Hoc Committee on Collective Bargaining of ALA)에서 처음으로 단체교섭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노조결성,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ALA가 직종 노조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서들이 그들의 소속기관이

32) Gail Ann Schlachter. "Professionalism v. Unionism." *Library Trends*, vol. 25, no. 2(Oct. 1976) p. 451-473.

속한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大學教授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나 教職聯盟(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또는 地方公務員聯盟(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등의 회원이 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사서직이나 정보관리직이 단체교섭에서 내세우는 爭點은 물론 임금인상, 작업환경개선 등의 물질적인 조건도 있지만 경영결정참여에 관한 것, 외부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 등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Cruzat는 1990년대의 사서직 또는 정보직의 단체교섭진전 전망에 대해 이들의 속성이 정보에 밝은 고학력집단의 정신노동자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동등한 대우는 당연히 요구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의식이 강하므로 단체결성이나 집단행동등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것에는 별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분야는 기술변화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화가 큰 분야이므로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적응과 계속교육으로 업무상 뒤지지 않고 직장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정성이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운영추세가 參與經營을 指向하고 전문직의 자기향상, 팀워크,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체교섭보다는 協調交渉(Collaborative Bargaining)으로 경영진과 전문직의 화합이 이 직종에서는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그는 내놓고 있다.³⁴⁾

4) 단체교섭 해결 절차

다른 직종에 비해 사서직이나 정보관리직의 노사문제가 원만한 편이지만 앞에서 既述한 대외적인 專門性 確認에 대한 주장과 내부적인 업무별, 성별차별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시대적인 노사문제 활성화의 過中에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경영자가 放心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단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도서관이라고 예외는 아니고 사서들

33) Gwendolyn S. Cruzat.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library manager."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7, no. 4(Winter, 1986) p. 451-473.

34) 2) Legal issues affecting... pt. 3. *American Libraries*. vol. 19, no. 3(Mar. 1988)

이라고 특별히 쉬운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냉철하게 여기에 임해야 한다.

Cruzat는 도서관의 경영진에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단계를 열거하였는데 1) 전에 모든 협상기록을 검토할 것, 2) 이전의 계약을 면밀히 검토할 것 3) 요구자 측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아 볼 것, 4) 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할 것, 5) 교섭책략을 계획 할 것 6)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할 것과 7) 파업가능성과 그 대책을 세울 것 등을 들어서 이 분야에 익숙치 못한 경영자에게 行動指針을 제시하고 있다.³⁵⁾

7. 財産과 사람의 보호문제

산업화 사회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범죄율이 계속 증가되며 그 종류나 범죄장소도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일반시민을 봉사하는 공공도서관이나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학교나 대학도서관 등은 재산의 보호문제와 그곳을 드나드는 이용자나 직원의 신변보호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는 연구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정보제공 과정이나 결과에서 업무상 지게 되는 責任의 문제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일도 기관장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도서관이 범죄장소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밤늦게 혹은 주말의 한가한 시간에 열려 있고 아무도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범죄자들에게 쉬운 標的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나 시청각자료 器機등이 쉽게 現金化할 수 있는 품목이 많고 특히 요즈음에 와서 간편하고 값비싼 전자기기, CD나 비디오는 책보다 換金價値가 높기 때문에 쉽게 들고 나올 수 있으며 藝術品이나 骨董品도 도서관 내에 쉽게 진열되고 있는 점도 절도범을 유인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로 옛날부터 도서관에 대한 보안이 비교적 허술하다. 책도둑을 관대하게 생각하는 문화전통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백화

35) Cruzat, Op. cit. p. 78-79.

36) Ibid. p. 75-78.

점이나 수퍼마켓보다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보안이 철저하지 못하고 또 심리적으로 도서관의 이용자들까지도 도서관의 재산이나 기물은 주인없는 물건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圖書館犯罪研究 프로젝트(Library Crime Research Project)가 조사한 도서관에 관련된 범죄의 主宗을 이루는 것이 소장품 또는 기기 시설이나,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vandalism), 도난,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이용자, 사람에게 대한 상해행위, 放火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⁷⁾

1) 재산의 보호문제

도서관이 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의도적인 물건의 파괴행위, 절도행위, 방화행위가 주종이 된다. 소장품이나 기기 또는 시설이나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불단을 품은 집단이나 개인이 공공기관이나 공공기물을 파괴함으로 그 불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파괴자의 필요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비싼 것 또는 이용도가 높은 것을 표적으로 삼는다. 또 도서관에서의 도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통책을 훔치는 이용자로부터 귀중본이나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을 그 가치를 보고 훔치는 전문절도가 있을 수 있다. 放火는 失火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불을 놓은 것이므로 vandalism 과 그 목적은 같으나 피해 결과는 더 크다.

미국의 도서관이 해마다 겪는 물질적인 손실은 3%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藏書增加率이 전체적으로 5%를 넘지 못하는 통제에 비추어 보면 대단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손실 중 도난이나 파괴행위의 대상이 값진 장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은 심각한 정도이다.³⁸⁾

이러한 공공기물의 파괴나 방화 혹은 절도가 모두 刑法에 저촉되는 문제

37) Allen Lincoln. "Patterns and cost of crime." *Library Trends*, vol. 33, no. 1.(Summer, 1984).

38) Richard W. Boss. "Collection security." *Library Trends*, vol. 33, no. 1(Summer, 1984) p. 40.

이므로 도서관 경영자는 그 지역의 公安擔當部署와 긴급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처나 일단 손해를 입은 후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조치를 철저히 해 놓아야 한다.

요즈음에는 많은 도서관에서 電子探索裝置를 출구에 설치해 놓아 대출 허용이 되지 않은 소장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출구에서 일일이 소지품 조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도서관 내에서도 썬킷 TV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런 것들도 개인을 감시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비난받을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우선 건물 구조적인 안전책에 만전을 기해 출입구관리 이외에도 창문, 비상구의 관리, 건물내에서도 사무실이나 컴퓨터실 같이 중요한 서류나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의 출입은 이중적으로 통제하는 보안책이 필수적이다.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 자동살수기의 設置는 물론 계속적인 점검으로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無人冊返還窓口는 도서관 본 건물과 隔離시켜 놓는 등의 건축구조상 배려도 필요하다.

2) 직원과 이용자의 보호

물질적인 손실이 그 자체로 끝나는데 비해 사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상사는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른 일로 비화되거나 그 영향이 연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가장 흔한 불상사는 말썽을 부리는 이용자를 다루는 일인데 문제의 이용자란 도서관이나 사무실에 들어와 단순히 떠들거나 주위를 어지럽혀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가 일을 하는데 방해로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특하면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이용자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좀 더 비정상인으로 노출증을 보이거나 인적이 드문 書架部分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 불법매매 특히 마약거래나 사용을 하는 사람까지 천태만별의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³⁹⁾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 관할 공간

39) 2) Legal issues affecting... pt.4. *American Libraries*, vol. 19, no. 4(April, 1988) p. 315-1

내 부상을 입은 직원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두 도서관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된다.

요즈음에 와서 舉論되는 새로운 문제는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센터의 정보제공 봉사에 대한 業務上 過失(Malpractice)에 관한 것이다. 원래 업무상 과실은 의학계에서 의사의 실수나 무지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환자측의 보상요구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지식이나 기술을 상품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Nasri는 업무상 과실을 '고의적인 부주의나 단순한 무지로 인한 전문직 수행과정에서의 過失이나 無能'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가고 권리주장이 더욱 강해지는 추세이므로 모든 전문직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었으므로 의사나 변호사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비한 보험가입률이 20년전에 10%에 지나지 않던 것이 현재는 75%를 웃돌게 되었으며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대비책이 시급히 강구된다고 하였다.⁴⁰⁾

도서관에서의 정보봉사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직은 도서관을 상대로 그릇된 정보나 해답을 준 것에 대한 損害賠償訴訟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정보서비스센터의 유료봉사나 컨설턴트 회사의 값비싼 諮問등에서 얻은 정보의 내용이 틀렸거나 不適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도서관의 무료 정보봉사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유료정보봉사와 같은 수준을 기대할 수도 있다. 참고사서들은 정보제공에서 내용의 분석이나 자문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분명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업무상 과실혐의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3) 보험가입의 문제

物的, 人的損失에 대해 제도적인 예방책이나 用意周到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이나 어쩔 수 없는 不祥事가 생기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40) William Z. Nasri, "Malpractice liability: myth or realit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 no. 4(Winter, 1980).

보험가입의 문제는 기관 운영에서 필수로 생각해야 한다. 도서관이나 정보 서비스 기관이 들어야하는 보험은 재산에 대한 것(Property insurance)과 업무상 책임에 관한 것(Liability insurance)을 들 수 있다.

경영자는 보험비용을 예산에 反映시켜야 하며 보험이 도서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受容하는가를 보험내용문서에서 정확히 검토할뿐 아니라 보험회사와의 구두협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資産과 人力의 가치를 정확히 評價하여야 하며 그 평가는 계속 달라지는 것이므로 주기적인 再評價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상 책임에 대한 보험은 경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 단체가 推薦하는 기본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기 타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는 잘못하면 刑事的인 處罰이나 法的 紛爭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 외에도 도서관 경영자가 기관의 利益을 위해 알아야 할 법적 문제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公益機關으로서 그 사회의 개인 篤志家나 企業體의 寄附를 誘致하려면 稅制上 허용되는 공익기관에 기부에 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잘 알고 설득해야 효과적인 募金을 할 수 있으므로 租稅法의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며 教育機材 수입에 관한 關稅上의 혜택등도 도서관과 주요한 관련을 가지므로 관세법의 해당부분도 알아야 한다. 또 여러가지 정보유통에 관계되는 법률 중에서도 인쇄물에 대한 특혜를 주는 우편법이나 정보산업에서의 통신에 관계되는 법, 교육기관이나 정보기관을 돕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등도 연관법으로 들 수 있다.

IV. 맺는 말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을 만든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더구나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법이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산업의 발전속도나 일상사회생활에의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문제의 출현가능성은 恒存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는 확고한 전문직의 倫理意識이 더욱 필요하다. 전문직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그 직종의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실제적인 실행지침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문제가 윤리나 상식에서 합의를 이루고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ALA에서는 1938년에 사서들을 위한 倫理綱領을 내놓은 이후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여 몇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81년에 개정된 것이다.⁴¹⁾ 미국정보학회(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에서도 정보관리자를 위한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⁴²⁾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해 지고 전문적인 세분화 현상이 뚜렷해 지는 현시대의 어느 분야에서도 건전한 직업윤리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公明正大한 법의 適用이 調和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유성, “男女僱傭平等法の 比較法的 高찰” 『서울대 법학』 71, 72 호(1987. 12) p. 141-62.

『大韓民國 新法典』. 별권: 「稅法典」 이택규: 대표편자. 서울: 법률신문사, 1989.

대한민국. 문화공보부. 「美國著作權法과 韓美間의 저작물보호」 서울: 1987.

변재욱,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9
李淳子, 「저작권의 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公正使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41) 16) 참조

42) B.J. Kostrewski and C. Oppenheim. “Ethics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 1(1980) p. 277-283.

T. Bearman, “Information Bill of Rights.” Paper presented at a session at ASIS Annual Meeting, Las Vegas, Oct. 21, 1985.

- 李淳子, “컴퓨터와 연관된 知的所有權의 보호책의 現況과 問題點.” 「정보관리학회지」, vol. 1, no. 1(1984) p. 9-24.
- 「情報産業法令集」, 89 증보판. 서울: 每經미디어, 1989.
- 차배근. “알권리와 국가이익.” 「신문연구」, 44(1987. 12) p. 53-61.
- 한상범. “平等原則과 性差別의 社會構造.” 「고시연구」 142(1986. 1) p. 12-24.
- Barnes, Robert F. “Some thoughts on professional ethics codes.” *ASIS Bulletin*(April / May, 1986) p. 19-20.
- Berninghausen, David K.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anship: advances and retreat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9(1979)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p. 1-29.
- Brand, Marvin, ed. *Security for libraries: people, buildings, collections*. Chicago: ALA, 1984.
- Busha, Charles, ed. *An Intellectual freedom primer*.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7.
- Castagna, Edwin. “Censorship, intellectual freedom, and librarie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1(1971)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p. 215-251.
- Cooper, Elizabeth A. “Equal pay and gender: implications of court cases for personnel practic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5, no. 4(Winter 1984) p. 71-89.
- Current problems in copyright. Walter Allen: Issue editor. *Library Trends*, vol. 32, no. 2(Fall 1983.)
- Dickson, Elizabeth and Myers, Margaret. “Affirmative action and American librarianship.”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8(1978)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Dragich, Martha J. “Information malpractice: some thoughts on the potential liability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Sept. 1989) p. 265-272.
- Employee organiz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libraries*. Margaret A. Chaplan: Issue editor. *Library Trends*, vol. 25, no. 2(Fall 1976)
-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a report to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y the Commission on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Chicago: ALA, 1986.
- Freedom to read, 1970* A Joint Statement of ALA and AAP.
- Freedom to view*, Adopted by the Educational Film Library Association and ALA Council. In *Defusing censorship*, by Frances Jones. Phoenix: Oryx Press, 1983. Appendix: p. 157-8, 186-91.

- Greenwalt, Kent. Legal protection of privacy: Final report to 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 Polic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ashington, 1975.
- Harter, Stephen and Busha, Charles. "Libraries and privacy legislation" *Library Journal*(Feb. 1, 1976) p. 475-481.
- Hauptman, Robert, *Ethical challenges in librarianship*. Phoenix: Oryx Press, 1988.
- Hildenbrand, Suzanne. "Women's work within librarianship: time to expand the feminist agenda." *Library Journal*(Sept. 1, 1989) p. 153-155.
- Intellectual freedom, Evertt T. Moore: Issue editor. *Library Trends*, vol. 19, no. 1 (Summer, 1970)
- Johnston, Donald F. *Copyright handbook*. 2nd ed. New York: Bowker, 1982.
- Jones, Frances M. *Defusing censorship: the librarian's guide to handling censorship conflicts*. Phoenix: Oryx Press, 1983.
- Legal issue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rs*. William Z. Nazri: Editor.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7, no. 4(Winter, 1987)
- Library Bill of Rights. 1980. In *Defusing censorship*. 1983. Appendix. p. 157-58.
- Morris, John. *The Library disaster preparedness handbook*, Chicago: ALA, 1986.
-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Final report*.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79.
- Ploman, Edward W and Hamilton L. Clark.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utledge and Keagan Paul, 1980.
- Privacy, secrecy and national information policy*. Robert H Burger: Issue editor. *Library Trends*, vol. 35, no. 1(Summer 1986)
- Protecting the library*. Alan Jay Lincoln: Issue editor. *Library Trends*, vol. 33, no. 1 (Summer 1984)
- Ray, J.M. and Rubin, A.B. "Pay equity for women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ARL salary Surveys, 1976 / 77-83 / 84.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48, no. 1(Jan. 1987) p. 36-49.
- Todd, Katherine. Collective bargaining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library field. *Library Quarterly*, vol. 55, no. 3(July 1984) p. 284-99.
- Weibel, K. and Heim, Katherine, ed. *The Role of women in librarianship, 1876-1976*. Phoenix: Oryx Press, 1979.
- Weil, Ben H. and Polansky, Barbara F. *Iralic Copyright Fundamentals: Key Writings on Technological and Other Issu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5.
- Women and leadership in the library profession, Rosemary Ruhig Dumont: Issue editor. *Iralic* vol. 34, no. 2(Fall 1985).

Legal Issues in Information Management

Abstract

Soon Ja Lee*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re no different from any other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oday, their managers have to make many more decisions which have certain legal implications than before.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ir parts can not be an acceptable excuse anymore, since the consequences sometimes maybe quite serious.

This paper outlines some important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ervices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y are: constitutional rights on human knowledge activities; library act and it's related laws; censorship and right to know; information acc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law; labor relations; protections of the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s, etc.

The laws are not static; rather, they change with th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managers, as well as the staff member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should b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changes in the field,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service to the clients an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laws, which may discredit their services and the institutions.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